

공동활용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작성방법(제42조제2항 관련)

1. "공동활용계획서"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다.
 - 가.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 활용하는 경우에는 동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소별 업무내용(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·감독, 시설·장비 확인 등), 근무소요시간과 배분근무계획 등
 - 나.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제조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경우에는 업소별 취급 유해화학물질명 및 사용량과 1회 사용 시 소요시간(원료투입부터 포장까지)과 업소별 사용시간의 원칙적 배정내역 등
 - 다.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보관·저장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경우에는 업소별 사용면적 또는 사용용량, 위치 등을 구분하여 도면에 표시하고 잠금장치의 열쇠 보관관리 등 안전설비관리계획
 - 라.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공동 활용하는 경우에는 운반하려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별·성상별 일일운반소요량, 일일운반능력(대당운반능력×횟수×대수)과 운반차량의 업소별 활용시간배정계획, 세차 등 차량관리계획
2. "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"는 공동활용 업소의 위치와 이동로 및 이동거리 등을 표시한 도면에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
3. "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"는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청 시 또는 신고 시 제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·장비의 명세서로 같음한다.
4. "개별업소 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·의무 등의 협약서"에는 공동 활용 내역,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 공동대처방안, 대표업소의 선정,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한계 및 업무지원 내역(유해화학물질관리자 공동활용의 경우)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.
5. "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내역서"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부재 시 유해화학물질 관리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업무대행자

를 지정하고 그 업무내역을 기재한다.